

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1. 3. 16

관광건설위원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2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(2001.3.14)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문화진흥국장 주 준 길)

가. 제안이유

- 종전에는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 관련업무를 도지사가 조례로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업무집행권자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정함에 따라
-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중 신고체육시설업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
- 과태료 부과기준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
-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점에 대하여 상위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대상중 신고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
(제2조제7항 및 제8항)
- 과태료 감경 또는 가중 규정 삭제(제3조 제1항 단서 및 후단)
- 과태료 부과기준중 신고체육시설업 관련규정 삭제(제3조제1항 별표)
- 과태료 납부처를 도금고로 조정(제3조제2항제1호 별지 제1호 서식)
-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점 조정(제4조제1항)
 -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날부터 →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익 수)

충청북도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신고체육시설업 업무집행권자를 시장·군수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다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 개정 즉시 개정조치될수 있도록 해야 될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붙임서류 :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
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·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중 “자격”을 “자격이”로 하고, 동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,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단서 및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”를 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란중 “당시(군)금고”를 “도금고”로,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증란중 “시·군금고”를 각각 “도금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부과대상) (생략)</p> <p>1. (삭제 99.7.30)</p> <p>2.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.</p> <p>3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<u>자격</u> 없는 자를 배치한 자.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삭제 99. 7.30)</p> <p>6. (삭제 99. 7.30)</p> <p>7. <u>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.</u></p> <p>8. <u>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법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.</u></p> <p>9. (삭제 99. 7.30)</p>	<p>제2조(부과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</p> <p>2. <u>자격이</u> .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 <u>다만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.....</p> <p>..... (삭제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이의신청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<u>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</u>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. (개정 99. 7.30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이의신청) ①.....</p> <p>..... <u>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</u> 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 발 체

○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(체육시설업의 구분·종류)

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등록체육시설업 :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조정장업, 카누장업
빙상장업, 자동차경주장업, 승마장업, 종합체육시설업
... (9종)

2. 신고체육시설업 :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볼링장업, 테니스장업
골프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에어로빅장업, 당구장업
눈썰매장업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 ... (11종)

② (생략)

○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(체육시설업의 등록)

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99.1.18>

② (생략)

○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(체육시설업의 신고)

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99.1.18>

○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개정 99.1.18>

1. 삭제 <99.1.18>

2.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.

2의2.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.

3.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.

4.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.

5. 및 6. 삭제 <99.1.18>

7.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.

8.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4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.

9. 삭제 <99.1.18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. <개정 99.1.18>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<개정 99. 1.18>

○ **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**

①, ② (생략)

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. 다만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2000. 1. 18>

④ (생략)